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화학사고의 예방 및 관리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을 구체화하고,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대상자별 교육내용을 세분화하며,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 구체화(안 제29조제1항)

장외영향평가서 작성항목 중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로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었으나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시범생산용(시범생산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와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되지 아니하는 경우(동일한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 증설 등의 경우)는 변경허가 대상에서 변경신고 대상으로 완화함.

나.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시 첨부서류 정비(안 제29조제2항)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의 품목이 추가되었으나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시 장외 평가정보 변경 검토서로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변경허가 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변경신고의 경우 첨부서류를 사항별로 세분화하여 정함.

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대상자별 교육내용 세분화 등(안 제37조 및 안 별표 6의2 신설)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및 취급시설이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2년마다 8시간 이상 받도록 하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내용을 세분화하여 정함.

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의 개선(안 별표 5)

제조·사용 시설 및 설비 기준 중 인화성 유해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건축물은 벽·기둥 등을 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나, 해당 사업장에 적합한 불연재료의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안전성 평가 결과 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상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완화함.

<환경부 제공>

●고용노동부령 제153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4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교시 등 매니플레이터(manipulator)의 작동순서, 위치·속도의 설정·변경 또는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작업”을 “교시(敎示) 등[매니플레이터(manipulator)의 작동순서, 위치·속도의 설정·변경 또는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작업”으로 한다.

제223조 중 “로봇을 운전하는 경우(교시 등을 위하여 로봇을 운전하는 경우와 제224조 단서에 따라 로봇을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근로자가 로봇에 부딪칠 위험이 있을 때에는”을 “로봇의 운전(제222조에 따른 교시 등을 위한 로봇의 운전과 제224조 단서에 따른 로봇의 운전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로,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로봇의 안전기준이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용 로봇의 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조치하여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로봇의 안전기준이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는 그 로봇에 대한 안전매트 등을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 시

●국민안전처고시제2016-43호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6년 4월 7일

국민안전처장관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 기준 제정

1. 제정취지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 등이 각종 개발사업 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 칙(제1장)

- 우수유출저감대책의 배경, 필요성 및 목적 등
-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대상사업의 종류, 용어정의 및 행정절차 등

나. 기초현황조사(제2장)

- 우수유출저감대책에 필요한 기초현황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

다. 강우분석 및 적용강우량 설정(제3장)

- 강우량자료 수집 및 분석구역 설정 및 적용강우량 등에 관한사항